

#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6. 12. 7.
- 제출자 : 거창군수(재무과)
- 회부일자 : 2006. 12. 7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. 12. 13(제7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6 - 72호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개정이유

-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'06. 12. 31.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'09. 12. 31.까지로 연장하고
-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 전환과 법령의 개정 정비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확대(안 제18조, 제24조).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해 재산세·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음으로 비영리 출연법인도 감면대상에 포함
  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규정 중 대체입주 기한을 삭제

- 감면목적 달성 등 수익사업용 재산 과세전환(안 제27조 삭제).
  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% 감면 규정을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 삭제
-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(안 제1조, 제16조, 제17조, 제28조제2항).
  - 「철도법」 제76조 ⇒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(안 제16조).
  -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 ⇒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(안 제17조).
-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(부칙)
  - 적용시한이 '06. 12. 31 종료됨에 따라 이를 '09. 12. 31까지로 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. 12.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'09. 12. 31.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법령의 개정 정비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.
-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
  - 안 제1조(목적)에서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추가 개정하려는 것은 당초 이 조례의 설치근거에 대한 관계법령의 명확화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고,
  - 안 제16조(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에서 당초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며

- 안 제17조(시정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고,
- 안 제18조(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)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공사 등”이라 한다)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공사 등”이라 한다)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목적에 부합토록 하기위하여 출연법인도 감면확대 하도록 하려는 사항과
- 안 제24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를 대체입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확대를 위하여 대체입주 기한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됨.
- 이밖에도 제27조(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)는 감면 목적 달성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,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